

의안번호	제3092호
의결	2026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6. 4. 24.

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9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4. 24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법제처 권고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개정

(안 제22조제1항)

- (현행) 군수 또는 센터
- (개정) 군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

나. 예산조치: 2026년 당초 예산 편성 완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7962(2026. 2. 19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435호

가) 예고기간: 2026. 2. 25.~2026. 3. 17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군수 또는 센터”를 “군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보험가입) ① <u>군수 또는 센터</u>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2조(보험가입) ① <u>군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비용발생 요인: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 납부
- 소요예산: 3,260천 원(연간)
 - 보험 및 공제 3,260,000원×1회=3,260,000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 함.

작성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량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

제10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
2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
3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, 후유장애 및 의료·입원·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
2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